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115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정주석

피 고 A

변론 종결 2021. 4. 6.
판결 선고 2021. 4. 27.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2019. 2. 8.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9. 2.15. 접수 제165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유한회사는 2005. 5. 13. B에 대한 D의 신용카드대금채권, E카드의 신용카드대금채권, F은행의 카드론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7. C 유한회사로부터 B에 대한 가.항 기재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은 2020. 7. 21. 기준으로 원금 25,580,99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2,899,909원 합계 98,480,904원이다.

다. B의 부친인 G은 2017. 2. 22. 사망하였고, B과 피고를 포함한 7인의 자녀들이 각 1/7 지분에 관하여 망 G을 상속하였다.

라. B은 2019. 2. 8. 채무초과상태에서 망 G으로부터 상속한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2. 15.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1651호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양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H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래 다.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금채권 발생 이전에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대위변제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할 뿐,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 이전에 발생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피고가 주장하는 대위변제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지분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B의 1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2001. 3. 23. 10,000,000원, 2003. 7. 11.

4,6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앞서 B에 대한 채권을 가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수익자가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경남 함양군 J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인데 이를 망 G에게 명의신탁하였고, B을 비롯한 피고의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7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피고 소유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농가주택 26.45㎡, 부속건물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농가주택33.06㎡(이하 통틀어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3.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종전 건물은 1993. 7. 30. 멸실되었고, 이 사건 건물이 1994. 5.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사실, 피고는 종전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K단체로부터 1993.9. 21. 복지부조금 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1994. 6. 24. I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목적으로 대출받은 농촌주택대출금 14,000,000원 중 최종 분할상환금(원금 1,834,77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31.부터 2013. 12. 29.까지의 이자)1,892,771원을 2013. 12. 30.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G이 1994.5.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4.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망 G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4. 6. 2.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②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촌주택대출금의 채무자는 망 G이었고, 피고는 2013. 12. 30. 위 대출금의 최종 분할상환금만을 변제하였을 뿐, 대출시점인 1994. 6. 24.경부터 2013. 1.경까지의 분할상환금을 피고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망 G의 사망 시점이 위 대출금 최종 변제일 이후인 2017. 2. 22.임을 고려하면 망 G이 위 기간 동안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망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L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7 지분에 관하여 L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3.12. 대위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가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⑤ 피고는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방문, 바닥, 장판, 벽면 등을 개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녀가 부모의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피고가 K단체로부터 복지부조금을 지급받은 사정은 피고가 종전 건물의 소유자였음을 뒷받침할 뿐 종전 건물 멸실 이후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까지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망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함양군

대 288㎡

갑구 순위번호 9번 지분 7분의4 중 7분의 1

2. 경상남도 함양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위 지상

조적조 (벽돌)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80.52㎡

갑구 순위번호 9번 지분 7분의4 중 7분의 1

--- 이상 ---

